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나.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

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고

라.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마. 결과 공개(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별첨1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법률 제10439호, 2011.3.8 공포, 2011.9.9 시행)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미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입법예고 결과

1. 이균호(구미시 비산동) 의견 처리결과

가. 관련법조문 : 조례안 전체

나. 예 고 분 야 : 조례안 전체

다. 의견내용 : 조례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 요구

-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각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구성과 운영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및 예산학교 운영

라. 처리결과(반영, 미반영, 일부반영) : 미반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공개 및 의견 반영을 하는 사항이며,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필요시 규칙을 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견회신여부 : 회신

2. 이봉도(구미폴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의견 처리결과

가. 관련법조문 : 조례안 전체

나. 예고분야 : 조례안 전체

다. 의견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원칙 및 수정 조례안 제안

○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원칙

- 참여의 개방성 보장
- 참여한 시민들에게 권한 부여
- 운영 과정의 투명성 보장

○ 조례안 수정 보완 요구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및 운영

라. 처리결과(반영, 미반영, 일부반영) : 미반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공개 및 의견 반영을 하는 사항이며,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필요시 규칙을 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견회신여부 : 회신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2011.3.8.개정, 2011.9.9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